

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5 ~ 89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5. 10. 26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변경함(안 제19조)

○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

○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

나.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함(안 제2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○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자전거 타기 교육 등)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

나. 예산조치 : 2016년 예산 21백만원 확보 예정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예산, 법무통계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5. 9. 11. ~ 10. 01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행정 및 재정지원) ①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
2.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

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,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제30조 중 “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행정 및 재정지원) ①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,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관련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21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 <p>제3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자전거 주차장·군민자전거·군민자전거 전용 주차장·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를 그 시설이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읍·면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	<p>제19조(행정 및 재정지원) ①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2.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</p> <p>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,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삭 제></p> <p>제3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-----</p>

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제19조(행정 및 재정지원)

①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

2.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

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,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,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

4. 작성자

도시건축과장 오 순 택